

'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4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4월 7일

3. 제안이유

주요사업의 추가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의 취득 및 처분, 국공유재산과의 교환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'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도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<재산의 취득>

○ 오송 월드컵경기장 건설

- . 위 치 :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(오송신도시 지구내)
- . 규 모 : 부지 440,797㎡, 수용능력 47천석
- . 기 간 : '97 - '2001(5년간)
- . 총사업비 : 130,000백만원(국비51,650백만원,도비78,350백만원)
 - '97부지매입비 : 10,000백만원

○ 금고 건물신축 기부채납

- .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(구민원실)
- . 건물신축 : 1,323㎡ (지하1층, 지상3층)
 -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신축 도에 기부채납
- . 사 업 비 : 1,600백만원

〈재산의 처분〉

○ 단양관광목장 매각

- . 위 치 :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450-1번지의 37필지
- . 매각재산
 - 토지 : 38필지, 1,148,733㎡
 - 건물 : 18동, 1,863.26㎡
- ※ 건물은 단양축협에서 신축하여 도에 기부한 재산임.
- . 재산가액 : 1,838백만원

〈재산의 교환〉

(경찰청과 교환)

○ 경찰청 재산 취득	_____	15,785.7㎡
.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(대지)		20,377.2㎡ 중
		1,500㎡
. 청주시 상당구 수동 36-3번지(대지)		6,115.7㎡
.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60-4번지의 5필지(전,답)		2,937㎡
. 음성군 금왕읍 무곡리 74-4번지(전)		4,114㎡
. 충주시 용탄동 1093번지의 2필지(주거,도로)		1,119㎡

○ 도유재산 처분	_____	28,870.5m ²
.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53-1번지의 2필지(대지)		28,629m ² 중
		26,287m ²
. 위 지상건물 (16동)		2,583.5m ²

(도교육청과 교환)

○ 교육청 재산취득	_____	35,387.47m ²
.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80-1번지(학교용지)		21,845m ²
. 위 지상건물 (4동)		11,347.47m ²
.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85번지(학교용지)		12,775m ² 중
		2,000m ²
.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4-2번지(학교용지)		195m ²

○ 도유재산 처분	_____	19,517.66m ²
.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98-1번지의1필지(체육용지)		2,251m ²
.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44-53번지의 3필지(대지)		11,368m ²
. 위 지상건물 (6동)		969.66m ²
.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-3번지(학교용지)		4,929m ²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'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주요사업의 추가 시행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·처분·교환의 사유가 발생하여 '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

가.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

- 월드컵경기장 부지매입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청주오송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오송신도시 지구내에 부지 133천평(440,797㎡) 매입비중 일부를 97년도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것이며
- 금고건물 신축 기부는 농협중앙회 충북지역 본부에서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도의 구민원실 부지에 400평(1,323㎡) 규모로 지하1층·지상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도에 기부하고 금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

- 단양관광목장 매각은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 450-1번지의 37필지 1,148,733㎡와 동부지에 단양축협에서 신축하여 도에 기부한 건물 18동 1,863.26㎡ 인데 이 재산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단양축협에서 투자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처분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

- 경찰청 청사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도가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국유재산과 도유인 농촌진흥원 부지와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

국유재산인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20,377.2㎡중 1,500㎡ 의
도청부지와 청주시 상당구 수동 36-3번지 6,115.7㎡의 공관부지 및
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60-4번지의 8필지를 교환 취득하는 조건으로
도유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53- 1번지의 2필지 28,629㎡
중 26,287㎡의 농촌진흥원부지 및 동번지 지상건물 16동 2,583.5㎡를
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

- 독립옥천공업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도교육청 소유인 옥천공고 부지
및 건물과 도유재산중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및 건물, 충북체고
부지, 진천고 부지와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

교육청 소유인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80-1번지 21,845㎡ 및 동번지
지상건물 4동 11,347.47㎡,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85번지 12,775㎡중
2,000㎡,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4-2번지 195㎡를 교환 취득하는
조건으로 도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98-1번지의 1필지 2,251㎡
와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44-53번지의 3필지 11,368㎡ 및 동번지
지상건물 6동 969.66㎡,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-3번지 4,929㎡
부지를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승인하여 줌이
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- '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